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명칭: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협회코드 6493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4. 판매 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 일: 2015년 3월 10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4월 8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 속 기 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자는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 ⑤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식(일본 제외)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탄탄한 펀더멘탈 (높은 GDP성장률, 외환보유고 증가, 신용등급 상향 등)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중국, 인도, 한국, 대만, 홍콩, 태국 등) 기업의 주식, 아시아 국가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또는 아시아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 증식을 추구합니다.

①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MSCI AC Asia ex Japan Index를 추종합니다.
- 동 지수를 효율적으로 추종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MSCI AC Asia ex Japan Index X 95% + call rate X 5%

- MSCI AC Asia ex Japan Index 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지수입니다.
- 해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산출기관의 홈페이지(<http://www.msci.com>)등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Bloomberg Ticker: MXASJ index

② 환헤지 전략

- **환헤지 여부**
집합투자업자는 통화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용 등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환헤지방법**
환헤지는 통화선물, 통화선도거래 및 FX스왑(외환 스왑)을 활용할 예정이며, 환헤지 방법은 거래비용 및 환 프리미엄 및 디스카운트를 고려하여 선택할 계획입니다.
- **목표헤지비용 및 환헤지의 장단점**

외화 자산을 미달러로 환산한 금액의 100%±10% 수준을 목표로 미 달러화와 원화간의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 국가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투자 국가 통화의 헷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외화 자산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동 펀드는 달러 및 외국의 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분	금액(원)	비율(%)
환헤지 비용	795,600	101.26

또한 외화 자산을 미달러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서 미 달러와 원화간의 환헤지를 실시 하므로, 미 달러가 아닌 외화 자산은 원화와 직접적으로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달러화가 아닌 외화 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에는 노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파생상품 투자위험</p>	<p>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장외파생상품 위험</p>	<p>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환율변동에 따른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해외자산의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 결과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후 원화의 가치가 해외 투자 대상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외화자산의 가치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져 손실이 발생합니다.</p>
<p>환헤지에 따른 위험</p>	<p>환율변동에 따라 해외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달러화와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해지 위험</p>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기타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일본제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기준이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일본제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	------	------	----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억원)	
김태수	1973	팀장	4	202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한화투신운용 전략운용팀 - 대한투자신탁 투자공학팀 -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멀티에셋운용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4.03.11 ~15.03.10	13.03.11 ~14.03.10	12.03.11 ~13.03.10	11.03.11 ~12.03.10	10.03.11 ~11.03.10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	11.05	-0.65	7.85	-3.00	19.16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14.27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A	9.27	-2.31	5.79	-4.86	16.90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14.27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1	8.83	-2.77	5.30	-5.33	16.42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14.27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e	9.27	-2.33	5.61	-5.13	16.36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14.27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2	8.87	-2.67	5.38	-5.24	-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3	8.97	-2.60	5.51	-5.15	-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4	9.06	-11.73	5.59	-5.06	-
비교지수	6.42	0.23	5.66	-4.23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5	9.16	-2.41	5.69	-4.95	-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p	7.92	-	-	-	-
비교지수	2.69	-	-	-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S	6.83	-	-	-	-
비교지수	2.40	-	-	-	-

주 1) 비교지수 : MSCI AC Asia ex Japan Index X 95% + call rate X 5%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명칭: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 64932)

구 분	협회코드	가입자격
종류 A	64933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 C1	64934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 C2	96149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3	96150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4	96151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5	96152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e	76395	인터넷 가입자

종류 C-f	93834	집합투자기구 및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종류 C-i	93835	100억원 이상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p	A175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자
종류 S	AP80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f	종류 C-i	종류 S	종류 C-p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2% 이내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 됩니다.

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f	종류 C-i	종류 S	종류 C-p	
집합투자업자 보수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0.000	0.050	0.350	0.950	
신탁업자 보수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기타 비용	0.1715	0.1660	0.1613	0.1647	0.1772	0.1694	0.1649	0.1768	0.1768	0.1009	0.0713	-
총보수 및 비용	1.8095	2.3040	2.1993	2.1027	2.0152	1.9074	1.8029	0.8148	0.8648	1.0889	1.6593	-
증권 거래비용	0.1047	0.1159	0.1041	0.0870	0.1176	0.1030	0.1089	0.6573	0.6573	0.1287	0.0832	-

* 판매회사의 보수를 중 종류C-e는 매년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 됩니다.

가. 2010년 9월 6일부터 2011년 5월 2일 까지 : 1.450%

나.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 까지 : 1.300%

다.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 까지 : 1.150%

라. 2013년 5월 3일 이후 : 1.000%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류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2.07 ~ 2015.02.06]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회계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기준일 직전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추정치로 사용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류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2.07 ~ 2015.02.06]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수익증권	309	707	1,130	2,308
종류C1수익증권	241	711	1,163	2,383
종류C-e수익증권	189	585	1,007	2,180
종류C-f수익증권	85	267	464	1,034
종류C-i수익증권	90	283	492	1,094
종류C-p수익증권	174	539	929	2,021
종류S수익증권	114	356	617	1,36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S 수익증권은 수익증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음)

2. 과 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자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에서 12% 세액공제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가)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1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다) 환매대금은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요약 재무제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8기	제 7기	제 6기
	(2015.02.06)	(2014.02.06)	(2013.02.06)
운용자산	9,507,212,828	13,339,244,793	19,115,338,532
증권	9,209,898,809	12,859,929,001	18,378,573,35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97,314,019	479,315,792	736,765,18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7,804,901	112,504,042	90,199,758
자산총계	9,545,017,729	13,451,748,835	19,205,538,29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2,923,734	348,608,223	328,547,717
부채총계	22,923,734	348,608,223	328,547,717
원본	8,441,725,167	13,709,451,094	18,490,421,857
수익조정금	-594,028,626	12,417,002	-44,274,413
이익잉여금	1,674,397,454	-618,727,484	430,843,129
자본총계	9,522,093,995	13,103,140,612	18,876,990,573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기	제 7기	제 6기
	(2014.02.07 - 2015.02.06)	(2013.02.07 - 2014.02.06)	(2012.02.07 - 2013.02.06)
운용수익	2,068,428,842	-572,511,168	1,454,432,458
이자수익	4,172,415	5,212,323	7,350,941
배당수익	263,436,105	378,239,076	549,626,292
매매/평가차익(손)	1,800,820,322	-955,962,567	897,455,225
기타수익	168,479	82,054	433,884
운용비용	795,600	1,654,200	1,994,4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795,600	1,654,200	1,994,400
기타비용	393,404,267	44,644,170	1,022,028,813
당기순이익	1,674,397,454	-618,727,484	430,843,129
매매회전율	45.97	117.54	143.27

주)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